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9
----------	-----

2022. 11. 25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5일

-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두환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. 12. 31.로 도래됨에 따라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제2항)

- (현행) 2022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7년 12월 31일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. 또한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- 2022년 제1차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2022.9.28~9.29.) 결과,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 필요성이 크므로, 해당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재원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해당 기금 관리·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4조(설치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   략)</p>	<p>제4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□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#### < 기금 「일몰제도」 준수 >

#### ○ 존속기간 연장

-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
- 이 경우,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 필요

※ 기금 존속기간 연장 심의절차 : 기금관리부서 ⇒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⇒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⇒ 의회 의결

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4항 제1호

## 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재원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